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및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86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3
2. 자료제출 지연일만큼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근거 마련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 영 · 황정아 · 김현정 · 박 정 · 박정현 · 박용갑
위성곤 · 박성준 · 소병훈 · 전재수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 의안번호 : 318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Ⅲ. 검토의견

1.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개정안은 ①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②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 소명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u>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u>공직후보</u> <u>자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u> <u>타 기관에</u>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u>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u> 공직후보자 또는 해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당 기관의 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소명을 마쳐야 한다. ④-----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은-----. ⑤-----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이 제2항에 따른 소명없이 제3항의-----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공직후보자의 부동의나 다른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등¹⁾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속력 있는 제재도 불가능하여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며, 이러한 소명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외에 위원회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해명하도록 하는 것임.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요구 거부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며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료제출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적시 확보를 통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16조²⁾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의 거부 주체로 공직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

2)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보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하는 것은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도 헌법 제17조³⁾에 따른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과 제37조제2항⁴⁾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수집·보유만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로서 엄격히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따라서 국회가 특별한 요건이나 제한 없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율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둘째,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별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사상이나 신조에 관한 정보, 범죄나 전과사실, 병력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6)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따른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요청을 받아 피의자 검거를 위해 ‘요양급여내역’(민감정보)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안 제12조제2항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2] 개별 법률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입법사례

근거 법률	요구 목적	제출대상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5조의6)	○ 국정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 납세자의 과세정보(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공개회의에 제공)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
「변호사법」 (제89조의9)	○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한국투자공사법」 (제37조)	○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 불가)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복사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 외부 공개 불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개정안 제12조제2항과 현행법 제16조⁷⁾에 분산 규율되어 있는데 이를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인용조문 수정⁸⁾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 7)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본문 생략)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8)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소명을 마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은 제2항(→제3항으로 수정)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지연일만큼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근거 마련

개정안은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출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마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된 기간
만큼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공직후보자나 해당 공직후보자가 임명 또는 지명되어 소속될 기관이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이 지연된 기간만큼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열흘 남짓에 불과하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여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자료제출이 지연되거나 자료거부에 대한 소명을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만큼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검

증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기간이 연장되어 공직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의 연장 여부로 여·야간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인사청문 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효성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